



제2016 - 94213 호

안 전 인 증 서

(사업장명)

서은플랜트기술(주)

(소재지)

(182-79)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하로110번길 64-6

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·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.

_____ 품 목 _____

압력용기(갑종)

_____ 형식,모델(용량,등급)/인증번호 _____

T-005 (0001 , 0.12m³) / 16-AE1AE-01421

_____ 인 증 기 준 _____

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 - 20호 (위험기계·기구 안전인증 고시)

_____ 인 증 조 건 _____

인증유효기간 : 설치일로부터 3년

2016년 01월 25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





심사결과 통지서

신청인	사업장명	서은플랜트기술(주)	사업장관리번호	140-81-884670
	사업자등록번호	140-81-88467	대표자 성명	정은경
	소재지	(182 - 79)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하로110번길 64-6		

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명		압력용기	
형식(규격)	T-006 (0001)	용량(등급)	0.082 m³

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에 따라 실시한

- 예비심사
- 서면심사
-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
- 개별 제품심사
- 개별 제품심사(제작중)
- 형식별 제품심사

결과가 [✓] 적 합
[] 부적합

함을 통지합니다.

2016년 01월 25일

인증심사원

김흥태

김흥태 (서명)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

